

工業所有權制度가 企業經營에 經濟發에 있어 工業所有權制度의



이 글은 本會가 主催한
第4回 發明學術大會에서
發表된 崔 春彥博士(사진 · 오뚜기食品研究所長)
의 講演內容이다.

崔博士는 이 講演을 통
해 『國家, 社會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產業發展 및 經濟成長이 가장 重要한 要素로서
指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그間 經濟
의 高度成長, 工業化 社會의 推進을 위해 國家
의인 努力を 傾注해 왔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
하는 經濟成長과 工業化社會의 實現을 위해서는
는 實質적으로는 關係企業의 成長과 發展이
그 根幹이 된다고 하겠다. 企業成長을 위한 要
素로서는 무엇보다도 企業의 技術開發力과 開發
한 新技術을 特許로서 權利化하여 나가는 일로
認識되기 시작했다』고 前提하고 『企業의 生命

은 새로운 技術의 確保로서 維持된다. 各 企業
은 每年 巨額의 研究投資를 하여 新技術을 開發
하고 있으나 그 結果가 法的으로 保護되는 唯
一의 길은 工業所有權이다. 技術開發은 研究課
題의 決定으로 始作되는데 이때 가장 重要한
根據가 되는 것은 그 分野에 있어서의 先行技
術의 調查이다. 어떤 技術이 이미 開發되어 있
으며 어느 方向에 아직 技術開發을 할 餘地가
있는지 調査해야 하며 競爭企業에 對應하기 위
해서는 어떤 企業이 어떤 技術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調査 · 檢討해야 한다.

그래서 研究課題가 決定되면 企業에서는 항
상 特許出願을 생각해야 하고 特許權의 取得이
可能하도록 研究方向을 잡고서 進行시켜 나가
야 한다. 그러니 先進技術의 調査에 있어서는
學術雜誌에 나와 있는 論文 등 文獻外에 特許
公報(實用新案公報도 包含해서)를 빼놓아서는

工業所有權制度의 本質

工業所有權이란 法律上으로 말하여 特許權, 實
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의 네 가지 權利를 總
稱하는 것이며 工業所有權制度는 이 네 가지 權
利의 取得과 活用에 關連된 制度이다.

特許權이란 새로운 發明을 한 사람에 대하여
設定해 주는 權利인데 이 發明은 新規性과 進步
性이 있고 技術的水準도 높으며 產業上 利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特許權을 取得한 사람
은 우리나라의 경우 12年間 그 權利를 獨占의 으
로 行使할 수 있다.

實用新案權은 이미 發明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改良해서 보다 便利하고 有用하게 使用할
수 있도록 構造나 形狀등을 새로 바꾼 實用的 考
案을 한 사람에게 設定해 주는 權利로서 이 考
案 역시 새롭고 進步性이 있어야 하며 產業上 利
用이 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實用
新案權의 權利期間은 10年인데 日常用具, 機械,
裝置등에 關連된 考案이 많고 發明과 差異가 있

미치는 影響 役割 중심

안된다. 工業所有權에 대한 調査는 자기의 研究結果가 特許가 된다는 것을 自覺못하고 있는 研究者로 하여금 特許가 되도록 각성시킬 것이며 때로는 他人의 特許權에 저촉되는 일을 避하도록 하는 조심성을 换起시키는 知慧를 제공해 준다. 即 工業所有權은 企業의 技術開發에서 하나의 確固한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으며 技術開發活動을 促進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最近 우리나라의 企業들은 技術開發의 必要性을 明白하게 認識하고 여기에 努力を 集中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企業들은 技術開發을 어떻게 하는 것이 經濟的이며 또한 効果의 인지 생각해야 한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가장 經濟的이고 効果的인 技術開發은 그 技術을 工業所有權으로서 權利化하여 獨占的 利益을 創出하는 것』이라고 強調했다. 崔博士의 講演內容을 紙上中繼한다.

—編輯者 註一

다면 技術的인 水準이 相對的으로 낮은 點 뿐이다.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發明과 實用新案을 區別하지 않고 있다.

意匠權은 特品의 形狀이나 모양, 色彩 또는 이 세 가지를 結合해서 感覺的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考案으로서 創作의이고 產業上 利用할 수 있을 때 그 考案者에게 設定해 주는 權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8年間 保護받는다.

商標權은 商品出處標識와 品質保證의 두 機能을 갖는 商標를 처음 考案한 사람에게 獨占使用할 수 있도록 許與된 權利이다. 보통 商標는 文

字, 記號, 그림 또는 이들을 結合해서 構成하고 있으며 商標權의 有效期間은 10年間으로 되어있지만 權利者의 希望에 따라 10年마다 權利更新을 할 수 있으니 거의 永久的인 權利라는 點이 앞서 말한 다른 工業所有權과 다른 點이다.

이 工業所有權중에서 企業의 技術開發이나 進歩와 크게 관련되는 것은 特許 및 實用新案權이며 商品과 營業에 보다 密接하게 관련되는 것이 意匠과 商標權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發明이나 考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秘法으로서 널리 世上에 公開되지 않게되면 그 發明이나 考案은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永遠히 消滅되어 버릴 것이니 이것은 人類全體로 보아 커다란 損失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經驗은 우리 人類가 이미 오래前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技術이라는 것이 人類의 歷史와 함께 進步·發達되어 왔지만 옛날에는 이와 같은 發達에 여러번의 斷絕이 있었는데 比해 近來에 와서는 急激한 發達을 보이고 있고 또 그 進步의 速度가 계속해서 加速되고 있는 것은 오직 훌륭한 技術이나 着想이 한 사람 또는 少數人에게 秘藏되었던 時代에서 多數人, 나아가서는 全人類에 公開되는 時代로 变한데에 緣由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무리 貴重한 着想, 훌륭한 技術이라도 이것이 公開되지 않으면 그 効用에는 限度가 있으며 國家社會는 勿論 人類全體의 進步發展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니 發明이나 考案의 内容은 어떤 形態로든지 公開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發明者나 考案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오랜 努力과 刻苦의 結晶이며 남이 追從할 수 없는 創造的思考의 結果이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資源이 投入된 값비싼所得이기 때문에 쉽게 또 함부로 公開할 수 없는 것이 當然하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發明이나 考案의 公開를 위해서는 여기에 投入된 努力이나 費用을 充分히 補償할 수 있는 代價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며 이것은 發明者나 考案者를 保護하기 위한 基本的인 條件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工業所有權制度를 다시 한번 整理해서 말한다면

첫째, 發明, 實用新案, 意匠, 商標 등으로 表

現되는個人의 知的活動의 產物을 「公報」라고 하는手段을 通해서 널리 公開함으로써 이 產物을 그個人의 所有로 부터 國民多衆 나아가서는 人類全體의 所有로 바꾸고 國家社會의 技術進步와 產業發展에 有用한 參考資料로 만들어 주며

둘째, 이와 같은 公開의 代價로서 發明 또는 考案者에게 財產權으로 行使할 수 있는 獨占的 權利를 一定期間을 定해서 부여하여 適切한 補償을 해준 다음 그期間이 지나면 그獨占權을 消滅시켜서 모든 사람이 發明, 考案의 内容 即 技術을 自由롭게 活用할 수 있게 하는 制度인 것이다.

보통 어떤 發明이나 考案이 「公報」形式으로서 公開되면 여기에 關聯있는 사람, 特히 이 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研究者나 技術者에게 새로운 刺戟을 주어 그들의 研究나 技術開發을 助長, 促進시켜 그보다 더 훈륭한 新發明 또는 新考案을 나오게 만든다. 換言하면 한 사람의 發明이나 考案의 内容을 公開한다는 것은 이 研究結果를 그 分野 全體研究者的 研究對象으로 擴大시켜 새로운 發明과 考案을 誘導하는 同時에 技術의 内容을 더욱 높은 水準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即 技術發展을 質·量의 兩面에서 誘發, 促進시키는 效果를 나타내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制度의 文化的 意義가 있다. 그러니까 「發明의 公開」는 工業所有權制度의 가장 중요한 基本要素가 되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發明이 公開되기까지의 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發明者가 發明의 内容과 權利主張의範圍를 적은 出願書를 特許廳에 提出한다.

(2) 特許廳의 審查官이 먼저 方式審查를 하여 하자가 없으면 出願後 1年 6個月 때 公開公報에掲載하여 一般에게 公開하고 出願人の 審查請求가 있으면 이것을 審查해서 特許性이 있다고 判斷할 때 이것을 「公報」로서 公開한다. 特許性이 없다고 판단되면 出願이 拒絶되니까 公告되지 않는다.

(3) 公報에 公告된 後 2個月間 그 어느 사람

으로부터도 異議申請이 없으면 特許로 登錄하도록하고 特許權을 부여한다. 萬一 異議申請이 있으면 關係되는 사람들의 說明을 듣고서 審查官이 特許權을 줄 것인지의 與否를 決定한다.

出願이 되면 專門家인 審查官이 特許性을 審查하고 公告後에는 利害關係者를 包含한 一般人의 異議申請을 기다리는 形式으로서 다시 한번 審查를 받게하는 것은 特許權을 비롯한 工業所有權이 獨占的 權利로서 權利者의 承諾없이는 그 누구도 이 技術을 使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權利者와 一般 第三者의 利害가 相反될 수 있는 만큼 權利부여에 慎重을 期하려는 意圖인 것이다. 그리고 發明이나 實用新案 모두 特許性的要件으로서 新規性과 進歩性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進步의 促進要因으로서 工業所有權은 強力하게 作用할 수 있으며 產業과 經濟發展의 誘因으로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企業經營과 技術開發

國家, 社會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產業發展 및 經濟成長이 가장 重要한 要素로서 指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間 經濟의 高度成長, 工業化社會의 推進을 위해 國家의 努力を 傾注해 왔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經濟成長과 工業化社會의 實現을 위해서는 實質적으로는 關聯企業의 成長과 發展이 그 根幹이 됨다고 하겠다.

企業成長을 위한 要素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수 있으나 最近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企業의 技術開發力과 開發한 新技術을 特許로서 權利化하여 나가는 일로 認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美國의 제록스社의 成長을 살펴볼 때 쉽게 理解할 수 있다.

제록스社는 事務機械 革命의 1番打者가 된 제록스複寫機의 生產企業이다. 이 例는 별 써 20년 가까이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만 企業經營과 技術과 特許의 관계를 보여주는 典型的인 事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록스는 1960年만해도 美國의 事務用複寫機市場에서 희미한 存在였고 賣出도 거의 零에 가까웠다. 그것이 1963年에는 全體市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여 複寫機의 方式別로 보았을 때 市場占有率이 首位에 올랐다. 그리고 1966年에는 4億弗이 넘는 賣出額으로서 市場占有率이 60%로 伸長했다. 이와 같은 成長으로 제록스社는 1967年에 從業員 1人當의 賣出額과 利益이 각각 3萬弗과 4千弗이 되었는데 機械分野의 巨大企業 GM社와 比較하면 利益에 있어서 倍가 되었고 또 化學分野의 大企業 ICI社와 比較하면 賣出額에서 2倍, 利益에서 3倍의 實績이 되는 것이다 (1967年の 美國의 1人當 GNP는 4千弗이었음).

日本의 有名한 成長企業인 松下電機(株)와 比較한다면 賣出額에서는 1.5倍, 利益에서는 3.3倍의 實績이었다. 제록스社의 이와 같은 急激한 成長과 높은 利益創出의 秘密은 바로 제록스의 技術과 特許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록스複寫機는 그 本體에만 約 200件의 特許를 가지고 있으며 그 周邊技術이나 附屬品의 特許까지를 合한다면 방대한 特許網으로 保護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最頂上 企業인 IBM社가 그 當時 4年이라는 歲月을 소비하여 複寫機를 開發했으나 發表와 동시에 제록스社로부터 特許權侵害로 被訴되는 곤욕을 치렀다. 제록스社는 複寫機를 파는 것이 아니라 特許制度를十分活用해서 技術을 獨占權利化하고 이 權利를 마음대로 行使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當初 제록스社는 이 複寫機를 貨貸만하였는데 政府가 販賣를 종용하게 되니 臺當 2萬9千弗이라는 비싼 販賣價格을 붙여 販賣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때의 工場出荷價는 2,400弗에 不過했다고 하니 무려 13倍와 비싼 價格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 事例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롭고 훌륭한 技術은 特許制度에 의해 지켜지면서 企業이 目的하는 莫大한 利益을 創出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特許權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特許性 있는 技術의 開發이 先行되어야만 하

는 것이다.

그間 우리나라 企業은 外國技術의 導入이라는 手段을 通해서 大量의 成長을 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이 成長이 鈍化되고 있으며 特히 輸出이 不振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商品의 國際競爭力 弱化에서 오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i) 國際競爭力を 다시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原料, 金融, 勞賃 등에서 比較優位를 찾기 힘들게 된 以上 아이디어와 技術에서의 比較優位에 依存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核心이 技術開發에 있음을 누구나 首肯할 것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現代를 技術開發 競爭時代라고 認識한다는 것이다. 新技術을 開發하는 것만이 企業에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서나 繁榮과 成長을 가져오는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國家와 企業이 意識적으로 技術開發을 하는 時代로 变모했다. 실사 츠 危險負擔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巨額의 研究費와 多數 研究人力을 動員하여 基礎, 應用, 開發의 研究段階를 거치고 試驗操業, 企業化에 이르는 複雜한 과정을 거치는 事業으로서 技術開發을 推進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應分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 1은 研究實施 企業들의 勞動生產性이 企業全體의 平均과 比較할 때 越等히 向上되었음을 나타내는 ディ터로서 技術開發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表 1> 從業員 1人當 賣出額 比較(1983년)

產業 部 門	全體企業(千원)*	研究實施企業(千원)
製造業	28,689	48,735
飲・食料品	38,708	59,637
纖維・衣服	20,651	29,538
化學	55,001	100,305
金屬	54,482	86,132
機械	21,393	35,436
電氣・電子	16,867	31,546

註 : 全體企業의 ディ터는 1982年

資料 : 全經聯, 「韓國經濟年鑑」(1984) 및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83年度 産業技術開發實態調查」(1984)의 資料로서 作成.

技術開發과 工業所有權制度

企業의 生命은 新로운 技術의 確保로서 維持된다. 各 企業은 每年 巨額의 研究投資를 하여 新技術을 開發하고 있으나 그 結果가 法的으로 保護되는 唯一의 길은 工業所有權이다.

技術開發은 研究課題의 決定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가장 重要한 根據가 되는 것은 그 分野에 있어서의 先行技術의 調査이다. 어떤 技術이 이미 開發되어 있으며 어느 方向에 아직 技術開發을 할 餘地가 있는지 調査해야 하며 競爭企業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어떤 企業이 어떤 技術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調査·檢討해야 한다.

그래서 研究課題가 決定되면 企業에서는 항상 特許出願을 생각해야 하고 特許權의 取得이 可能하도록 研究方向을 잡고서 進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니 先行技術의 調査에 있어서는 學術雜誌에 나와 있는 論文等 文獻外에 特許公報(實用新案公報도 包含해서)를 빼놓아서는 안된다. 工業所有權에 대한 調査는 자기의 研究結果가 特許가 된다는 것을 自覺못하고 있는 研究者로 하여금 特許가 되도록 각성시킬 것이다. 때로는 他人의 特許權에 저촉되는 일을 避하도록 하는 조심성을 换起시키고 知慧를 제공해 준다. 即 工業所有權은 企業의 技術開發에서 하나의 確固한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으며 技術開發活動을 促進시키고 있다.

先行技術의 調査는 企業의 立場에서 뿐만 아니라 國家資源의 浪費防止라는 面에서도 매우 重要하다.

우리나라의 1984年度의 特許 및 實用新案의 審查處理件數 및 登錄件數를 對比해 보면 審查合格率은 40.5%이다. 그러나 約 60%의 出願特許가 特許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되어 拒絕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先行技術의 調査未備에서 오는 新規性, 進歩性未洽에 原因이 있는 것이라고 推測되며 매우 아까운 浪費이다.

여기서 浪費라고 하는 것은 特許나 實用新案

의 出願手續에 소비된 時間과 費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 以上으로 出願의 内容을 이루는 發明·考案을 위해서 소비된 研究開發努力의 浪費가 문제되는 것이다. 研究結果를 發明 또는 考案으로 出願했는데 拒絕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研究 result 即 技術이 이미 누군가의 特許나 實用新案으로 公告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使用할 수 있는 技術로 判斷되었다는 것이 되니 여기에 投入되었던 時間, 人力, 費用을 他人의 特許權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發明을 하는데 使用했었으면 輝煌 經濟的이고 效果的이었을 것이다.

工業所有權制度는 各 나라의 國內法에 根據를 두는 것이지만 이미 國際化된制度로서 各國의制度가 部分적으로는 差異가 있어도 本質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파리協約의 加盟國家들은 모두 各國獨自의 特許法을 가지고 있으나 內外國人을 差別하지 않고 平等하게 權利를 保護해 주며 優先權主張도 認定해 주고 있다.

따라서 發明을 한 사람은 自國뿐만 아니라 特許權을 取得함이 有利하다고 判斷되는 모든 外國에 特許出願을 하여 自己의 技術을 權利로서 保護받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니 特許制度는 技術이 앞선 人便에서 보면 매우 有利하지만 技術이 뒤진 人便에서 보면 不利하고 自力에 의한 技術開發에서 하나의 障壁으로 作用할 수도 있다.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가 우리나라 企業에 대해 實施한 設問調查에 의하면 工業所有權制度가 技術開發을 促進시킨다는 應答이 90.8%로 壓倒的이나 沮害한다는 應答도 1.7%가 있어서 이와 같은 認識의 具體的原因이 分析되어야 하겠지만 最近 論議되고 있는 物質特許問題도 이와 같은 次元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物質特許란 飲食物, 醫藥品, 化合物 등 物質自體를 特許對象으로 認定하는 것으로서 大部分의 先進國에서는 이 物質特許를 許與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特許法 第4條의 規定에 따라

이와 같은 物質의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이나 技術開發能力水準이 아직은 先進國과 큰 隔差가 있기 때문이다. 即 先進國이 發明한 有用物質에 대하여 우리나라は 先進國技術을 導入해서 製造하는 模倣段階를 거쳐 이제 겨우 製造方法의 若干의 改善이나 工程改良이 可能한 程度의 技術水準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物質을 제조하는 方法特許만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餘他中進國의 特許制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萬一 物質特許를 許與하게 되면 그 物質의 製造, 使用, 販賣는 勿論 그 物質의 發明으로 發生될 수 있는 모든 權利를 特許權者에게 專用의 으로 許與해야만 하기 때문에 先進國은 다투어 우리나라에 物質特許를 出願하고 權利를 取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에 關聯된 國內企業은 이를 物質의 製造, 使用, 販賣의 全分野에서 로열티支拂이라는 莫重한 負擔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物質特許가 方法特許에 우선하는 것인만큼 研究開發意慾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最近 美國이 主가 되어 先進國들이 우리나라에서도 物質特許를 訸與하도록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物質을 發明하기 위해서는 實로 長대한 研究人力과 時間, 그리고 費用이 所要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投資를 報償받기 위해서 物質에 대한 發明을 特許權으로서 保護해야 하는 것은 明白하며 當然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技術開發實情으로 볼 때 時機尙早라고 생각될 뿐이다. 日本은 1950년에 物質特許문제가 論議되기 시작하였지만 오랜 檢討끝에 1978년에야 비로소 이것을 許與하였다.

우리의 技術水準이 分野別로 差異는 있겠지만 1950년의 日本과 比較해서 앞서 있지 못하다고 할 때 우리는 物質特許를 導入하는 制度變更에 慎重해야 하며 그 보다는 技術開發力의 提高와 技術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획기적인 努力이 時急히 傾注되어야만 할 것이다.

企業의 對應

最近 우리나라 企業들은 技術開發의 必要性을明白하게 認識하고 여기에 努力を 集中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企業들은 技術開發을 어떻게 하는 것이 經濟的이며 또한 効果의인지 생각해야 한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가장 經濟의이고 効果의인 技術開發은 그 技術을 工業所有權으로서 權利化하여 獨占的利益을 創出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2는 지난 3年間의 우리나라 工業所有權의 出願 및 登錄件數를 集計한 것인데 全體의으로 增加추세에 있어 技術開發이 活潑한 양 생각되지만, 內國人의 出願 및 登錄만을 본다면 技術開發力水準이나 技術進步와 密接한 관계에 있는 特許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出願件數의 25%程度, 登錄件數의 10%程度를 차지하는데 不過하여 우리의 技術開發이 여전히 不振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2〉 年度別 工業所有權出願 및 登錄狀況

區 分	年度別 出願 및 登錄件數			內國人 出願 및 登錄件數		
	82	83	84	82	83	84
特許	出願	5,924	6,394	8,633	1,556	1,599
	登錄	2,609	2,433	2,365	274	245
實用	出願	10,669	11,485	14,765	9,500	10,345
	新案 登錄	2,514	2,079	2,360	1,961	1,225
意匠	出願	11,902	13,947	15,870	11,231	13,174
	登錄	4,751	6,367	7,108	4,343	5,769
商標	出願	19,537	23,982	24,764	12,238	15,917
	登錄	7,793	11,022	11,674	4,420	7,239
計	出願	48,032	55,808	64,032	34,525	40,735
	登錄	17,667	21,901	23,507	10,998	14,469
16,236						

資料 : 特許廳

한편 우리나라 사람이 外國에 出願한 特許를 보면 外國인이 우리나라에서 出願한 件數에 比해 不過 4% 水準이고 登錄된 것은 4%에도 未

達된다(表 3 參照). 이와같은 甚한 不均衡은 結局 우리나라의 技術開發이 아직도 그 効果를 充分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端的인 증거다.

技術開發의 手段에는 自體研究 外에 外國技術의 導入使用이 있으며 이 技術導入은 現在도 계

〈表 3〉 韓國人의 外國出願 및 登錄件數

區 分	1981		1982		1983	
	出願	登錄	出願	登錄	出願	登錄
特 許	182	39	231	40	294	75
實用新案	119	27	99	28	136	15
意 匠	50	22	42	19	86	31
商 標	299	158	273	287	293	222
計	650	246	645	374	809	343

資料：特許廳 指導課

〈表 4〉 技術導入現況

區 分	1980	1981	1982	1983
認 可 件 數	222	247	308	360
代價支拂額(千弗)	107,232	107,104	115,689	149,501

資料：經濟企劃院

속 증가되고 있어 우리의 技術開發이 여기에 依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4 參照). 技術導入이 開發戰略으로서 重要하지만 自體技術開發, 그것도 特許性이 있는 高水準의 技術開發과 國內外特許權의 取得이 우리 企業과 國家의 技術競爭力を 強化시키는 첨경이 될 것이다.

近來 우리나라 企業들은 附設研究所의 設置, 研究開發投資의 增加, 高級研究人力의 雇傭 등 研究開發을 위해 意慾的인 姿勢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大企業에만 偏重될 것이 아니라 企業全體에 擴散되어야 하겠다. 또 實際 研究遂行에 있어서는 企業이라고 하는 特性 때문에 單獨研究가 主가 되겠지만 企業과 大學企業과 公共研究機關의 協同研究, 나아가서는 企業間의 協同研究가 더욱 活潑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特許出願을 보면 아직도 個人發明이 많은데 技術이高度化되고 複雜해질수록 個人的 研究보다는 多數研究者的 組織的인 研究가 빠른 成果

를 올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職務發明에 대한 果敢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採擇과 個人的 發明을 企業이 收容하여 發展시키는 努力이 必要하다. 左右間に 研究라는 것은 機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頭腦活動임을 생각할 때 技術開發의 成敗는 궁극적으로는 研究하는 사람의 資質과 能力에 彙着하게 된다. 따라서 研究者가自己의 能力を十分發揮할 수 있도록 모든 手段을 動員하는데 企業이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며 貴重한 研究結果의 하나하나를 工業所有權으로 權利化시키는 일과 함께 第三者의 特許權을 使用하여自己의 利益을 創出하는 일도 檢討해서 工業所有權制度가 갖는 모든 利點을 企業成長의 貢獻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近代企業은 계속 大規模화되고 多角化되는 傾向이 있다. 한편 技術은 더욱 더 高度化되고 있고 複雜해지고 있으며 商品의壽命(life-cycle)은 차츰 短縮되면서 技術進步의 速度는 커지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는自己가 갖고 있는 特許 外에 남아 가지고 있는 特許를 活用해야 하는必要性이 擡頭된다. 그래서 先進國의 企業들은 각社가 갖는 特許權의 實施를相互認定하는 크로스라이센스 契約을 締結하여 不足技術의 補完과相互技術의 向上을 이룩하고 있는例가 많다.

그러니 우리도 技術導入을 單純한 노우하우導入에서 脫皮시켜 새로운 特許權의導入으로 定着시켜야 할 것이고 國內企業끼리는 크로스ライ센스契約締結 등으로相互技術水準 提高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企業이 해야 할 工業所有權管理를 정리해 보면 첫째, 先行技術의 調查와 研究에의 페이드백. 둘째, 自社의 研究開發成果를 工業所有權으로誘導. 셋째, 경쟁社의 研究開發成果가 工業所有權으로 되는 것의沮止. 네째, 他社의 特許가 自社에게 有利할 경우 그 特許權者로 부터 라이센스를 얻는 方法의 探索 등이 된다.

工業所有權制度가 企業의 成長과 發展을 促進하는 要因으로 作用하는 以上 企業은 이것을充分히 活用해야만 할 것이다. (※)